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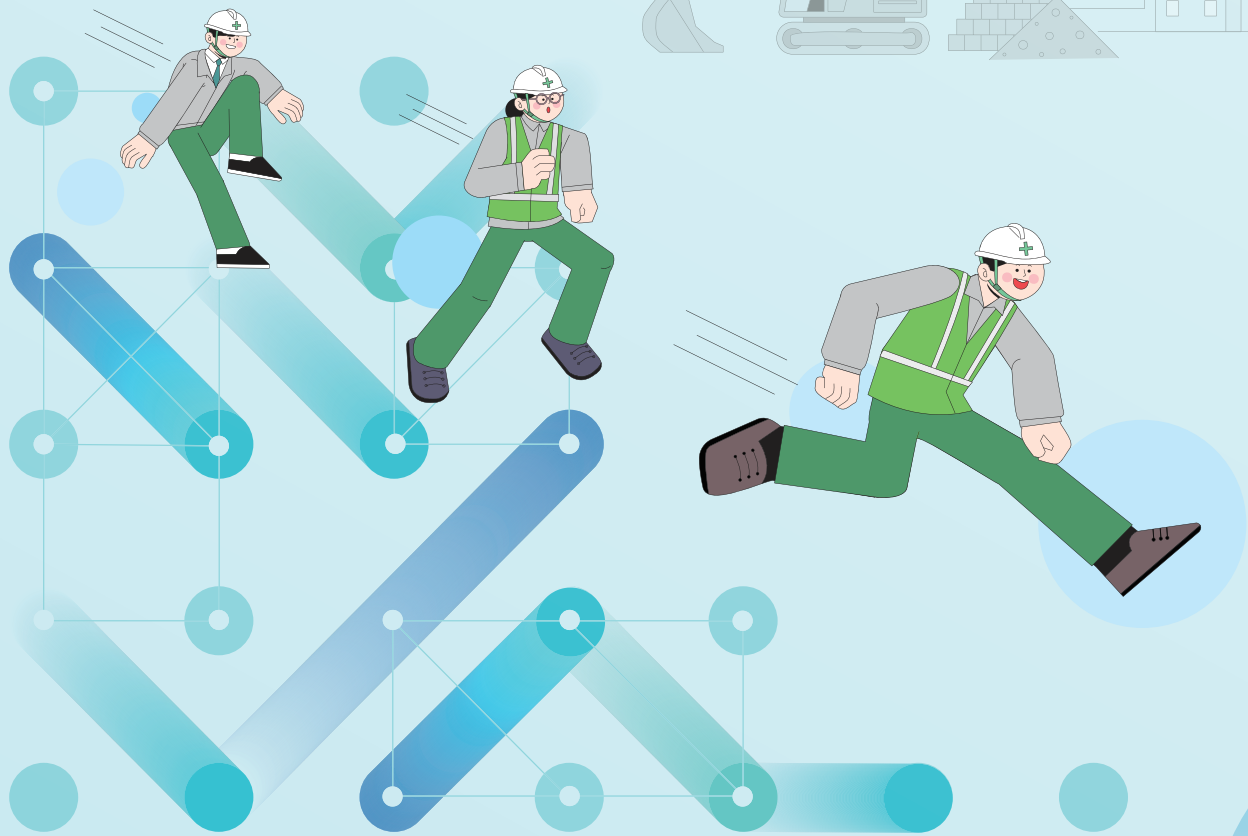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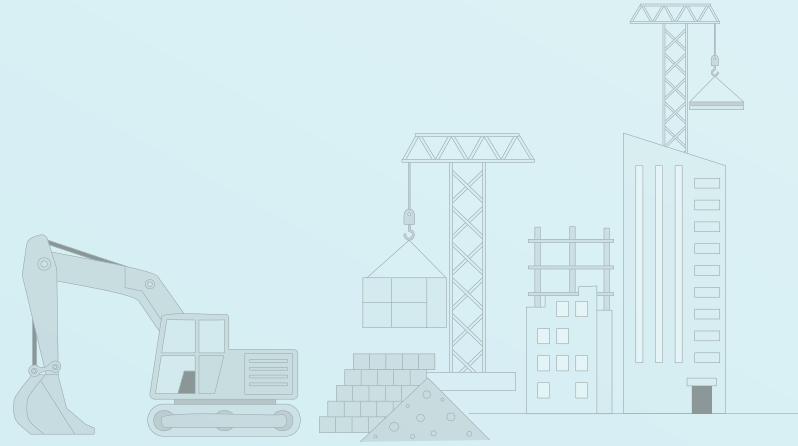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머리말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건물관리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료집」을 발간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종합관리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업무도 전문성을 요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 건물관리업의 사고 사망 재해예방과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가 함께 본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관리업 6대 위험 작업인 이동식 사다리 작업, 기계식 주차설비, 달비계 작업,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작업, 밀폐공간 작업, 이동통로(계단 등) 등의 주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동식 사다리 및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직업성 질병 발생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는 건물관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파악, 유해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귀 사업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 | |
|--------------------------------|----|
| I.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 6 |
|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하세요 | 7 |
|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꿉니다 | 8 |
|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법_작성예시) | 9 |
| II. 건물관리업 사망사고예방 | 14 |
| 건물관리업 안전점검 6대 위험작업 체크리스트 | 15 |
| 건물관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16 |
| 건물관리업 사고발생 원인·대책 | 17 |
| 이동 사다리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18 |
| 이동 사다리 작업 안전 지침 | 19 |
| 달비계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20 |
|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 21 |
| 건물관리업 질병사망자 발생 현황 | 22 |
| 경비관련 직종 질병 사망자 예방 | 23 |
|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 24 |

| | |
|----------------------------------|----|
| III.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 26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 27 |
| 1. 경영자 리더십 | 28 |
| 2. 근로자의 참여 | 30 |
| 3. 위험요인 파악 | 31 |
|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32 |
| 5. 비상조치계획 수립 | 33 |
|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34 |
| 7. 평가 및 개선 | 35 |
| IV.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 38 |
| V. 안전보건스티커 모음집 | 41 |

I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법_작성예시)



위험성 평가, 이렇게 하세요!



Who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When ^{언제}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Where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What ^{무엇}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How ^{어떻게}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Why ^왜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평가시기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 [최초평가]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 [정기평가]최초 평가 후 1년마다
- [수시평가]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개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소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_작성예시)

■ 평가대상:

■ 실시일자:

■ 평가자: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위험성 확인결과 | | | 개선 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 |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 | |
| 일반작업 | 시설물 관리 및 이동 중 돌출물(오철, 턱) 등에 걸리거나 헛디딤 넘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위의 장애요인 및 주의표지는 부착하였는가? | | ✓ | | 이동 시 이동통로 정리정돈, 장애물 제거 조치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배관 및 전선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였는가? | ✓ | | | | | |
| |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부딪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주의표지는 부착하였는가? | ✓ | | | | | |
| | 시설관리 작업 중 바닥의 물기, 오일 등에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신발을 지급 및 착용하였는가? | | ✓ | |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3-xx-xx | 안젤이 |
| | 관리 작업 중 개구부 등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 및 출입 금지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 | ✓ | | 개구부 덮개 및 안전 난간 설치 관계근로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 | '23-xx-xx | 안젤이 |
| |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어두운 장소를 관리 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충분한 조명(75Lux) 확보 노후된 형광등 교체 | '23-xx-xx | 안젤이 |
| | 핸드그라인더, 휠, 연삭기 등 회전기기의 방호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 ✓ | | 방호덮개 설치 | '23-xx-xx | 안젤이 |
| 시설물 유지관리 | 핸드 드릴 등 말림 위험이 있는 기계를 조작할 때 말려들 위험이 없는 장갑을 착용하는가? | | ✓ |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이동형 전동기계 전선피복 손상에 따른 감전예방을 위해 사용전 피복상태를 점검하는가? | | ✓ | | 노후된 충전부 교체 | '23-xx-xx | 안젤이 |
| | 전선피복 손상에 따른 감전예방을 위해 외함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노출된 충전부에 의한 감전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누전차단기 설치 | '23-xx-xx | 안젤이 |
| | 누전되는 전기설비의 외함접촉 방지를 위해 접지 및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교류아크용접기 감전예방을 위한 자동전격방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전기설비 유지보수 시 LOTO(전원조작 예방)를 실시하는가? | | ✓ |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조치 표지판 부착 절연장갑 및 절연장화 착용 | '23-xx-xx | 안젤이 |
| | 발전기실 베타데리는 폭발위험을 대비 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전기기기 & 전기설비 | 인화성 물질의 보관장소는 충분한 환기, 소화용품 비치, 화기를 제한하고 있는가? | | ✓ | | 인화성물질 위험저장소 설치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23-xx-xx | 안젤이 |
| | 보일러 설비의 압력방출장치, 수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 | | 보일러 작업안전수칙 준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저수위 사고방지를 위한 급수탱크 수위 수시 확인 | '23-xx-xx | 안젤이 |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위험성 확인결과 | | | 개선 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 |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 | |
| 시설물 유지관리 | 전기기기 & 전기설비 | 용접 시 화재방지를 위해 불티방지포 및 소화기 비치 등 조치를 하고 작업하는가? | ✓ | | 불티방지포 및 보안면 착용 소화기 비치 | '23-xx-xx | 안젤이 |
| | | 용접 시 화상 예방을 위한 역화방지기는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조경 & 제초작업 | 예초기 작업 시 돌맹이 비산을 막기 위해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보호 장치는 착용하는가? | ✓ | | 예초기 안전작업방법 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보안경, 안전모, 베임방지장갑 등) | '23-xx-xx | 안젤이 |
| | | 조경 엔진톱 작업 시 주변 사람이 톱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하는가? | ✓ | | 엔진톱 작업 시 주변사람과 이격거리 유지 | '23-xx-xx | 안젤이 |
| | | 맨손으로 작업하여 풀, 낮, 톱 등에 손이나 다리 베임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착용하는가? | ✓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보안경, 안전모, 베임방지장갑 등) | '23-xx-xx | 안젤이 |
| 고소작업 | 이동식 사다리 | 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사용하는가? | ✓ | |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교체 | '23-xx-xx | 안젤이 |
| |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 ✓ | | | | |
| |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및 작업 전 이상 유무 확인하는가? | ✓ | |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작업 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작업 승인 후 작업 | '23-xx-xx | 안젤이 |
| | | 바닥과 사다리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이동통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대를 이동시키는가? | ✓ | | | | |
| | |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사다리 결함 추락예방을 위해 작업전 사다리를 점검하고 있는가? | ✓ | | | | |
| | | 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 간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대 또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하거나 이동방지용 고정장치 사용 | '23-xx-xx | 안젤이 |
| | | 작업자를 태우고 사다리를 이동시키지는 않는가? | ✓ | | 사다리 이동 시에는 작업자가 완전히 내려온 후 사다리 운반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고정 사다리 | 작업높이 1.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가? | ✓ | | 1.2m 이상인 경우 고소작업대 또는 비계를 조립하여 해당작업 실시 | | |
| | |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운 상태에서는 사다리 오름/내림 작업을 금지하는가? | ✓ | | | | |
| | | 사다리 노후에 따른 사다리 부식은 없는가? | ✓ | |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7m 이상의 사다리 등받이는 설치되어 있는가? | ✓ | | 추락방지 등받이울 설치 | '23-xx-xx | 안젤이 |
| 미화작업 | 계단청소 등 | 계단청소는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업시 시야 미확보 | ✓ | | 뒷걸음질로 계단을 내려오는 방법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교육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장애물이 계단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 계단에 물건 적재 금지 조치 및 주기적 정리정돈 실시 | '23-xx-xx | 안젤이 |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위험성 확인결과 | | | 개선 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
| |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 | | |
| 미화작업 | 계단청소 등 | 계단청소 시 계단에 미끄럼방지 조치는 하였는가? | ✓ | | | | | |
| | | 계단에 물기를 제거하였는가? | | ✓ | | 청소 작업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우천 시에 바닥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발판 등 설치 | '23-xx-xx | 안젤이 |
| | |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 | | | |
| | | 계단을 이용한 보행이동 중 작업자간의 충돌 위험은 없는가? | | ✓ | | 정리정돈 실시를 통한 안전한 통로 확보 | '23-xx-xx | 안젤이 |
| | | 계단의 조명은 어둡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75Lux 이상) | ✓ | | | | | |
| | | 계단을 뛰어서 이동하지 않는가? | | ✓ | | 이동 시 계단에서 뛰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갑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꽃집접속기를 취급하고 있는가? | | ✓ | | 손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전기제품 취급 | '23-xx-xx | 안젤이 |
| | | 청소 세척제 등의 사용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적절한 취급방법을 게시하고 있는가? |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요인 및 대처요령 등의 유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 무거운 재활용품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이상이 들고 옮기며, 가급적 이동대차 등 보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무거운 쓰레기 등 중량물 취급시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이동대차 등 보조설비 사용 철저 | '23-xx-xx | 안젤이 |
| 주차설비 작업 | 승강기 | 물품 보관장소의 어두운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
| | | 승강기주차설비 작업 시 엘리베이터에 작업자가 화물을 싣고 탑승하지는 않는가? | ✓ | | | | | |
| | | 승강기주차설비 작업 시 비상정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주기적으로 비상정지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확인 철저 | '23-xx-xx | 안젤이 |
| | | 승강기주차설비 작업 시 엘리베이터에 경보음 및 경고등이 설치,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
| | | 승강기주차설비 작업 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작업자가 강제로 개방하지는 않는가? | ✓ | | | | | |
| | 기계식 주차 설비 | 승강기주차설비 작업 시 감속기, 와이어 로프, 시브, 드럼 등 제동장치의 마모, 변형, 균열, 파손 및 작동상태를 작업 전 확인하고 있는가? | | ✓ | | 승강기주차설비 점검 등 작업 시 작동 상태 확인 철저 (육안검사 등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점검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승강기주차설비 고장, 수리, 점검 작업 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 | ✓ | | 점검, 수리 작업 시 LOTO조치 이행 철저 및 표지판 부착 여부 관리자 확인(현장 감독)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승강기주차설비 고장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보수를 하고 있는가? | | ✓ | | 관리원 직접 임의조작 금지 조치 | '23-xx-xx | 안젤이 |
| | | 자동차대수(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가? | ✓ | | | | | |
| | | 주차설비 사용매뉴얼, 도면 등을 주차관리 사무실내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 | | | |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위험성 확인결과 | | | 개선 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 |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 | |
| 주차설비 작업 | 기계식 주차설비 | 주차설비 승강장 정면에는 안전수칙, 사용하중 등을 부착하고 있는가? | | ✓ | 정격하중 초과 차량의 운반구내 진입금지 조치 | '23-xx-xx | 안젤이 |
| | | 주차설비 출입문 연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는 정상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 ✓ | | | | |
| | | 주차장 바닥의 물기나, 오일 등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제설작업 시에는 아이젠 및 방한복을 착용하는가? | ✓ | | | | |
| | | 지하주차장 등 어두운 장소에는 75Lux 이상 조도를 확보하고, 고장난 조명등은 즉시 수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주차관리인은 고가시성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휴대하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 | |
| | | 주차장 야간 순찰 시에는 랜턴과 무전기를 휴대하여 조도 확보 및 비상시를 대비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75Lux 이상 조도 확보 | '23-xx-xx | 안젤이 |
| | | 주차설비는 주차관리인이 조작하고, 가동 중지 시에는 가동키를 제거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 | 주차 및 차량 안내 | 주차설비의 수리-점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사전 전원 차단 및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가? | | ✓ | 주전원 차단 후 점검 확인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 '23-xx-xx | 안젤이 |
| | | 주차장 내 차량 및 사람 통행로의 장애물은 즉시 제거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 | | 차량 경로상에서 작업하여 운전 미숙 차량에 근로자 부딪힘 및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있는가? | | ✓ | 작업중 안내표지판 설치 신호수(유도자) 배치 | '23-xx-xx | 안젤이 |
| | 탐식식 청소차 차량 전복예방을 위한 경사지 이동금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재활용 차량(집게차 등)과의 접촉예방을 위해 신호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 | ✓ | | | | |
| 밀폐공간 작업 | 맨홀, 피트, 오페수 시설 등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감지 및 경보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위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질식위험장소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 | | 비상발전기 장시간 가동 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질식위험장소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 | | 작업 공정 중 질식 우려가 있는 산소결핍(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 작업이 존재하는가? | | ✓ |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 실시, 시간별로 산소농도 측정 | '23-xx-xx | 안젤이 |
| |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은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하여 작업을 하는가? | ✓ | | | | |
| |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에 대해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 |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 장소 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입금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관계 근로자와 출입금지 조치 시행 외부 감시인 배치 | '23-xx-xx | 안젤이 |
| |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 장소와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무전기 사용 등 작업자-관리자 간 연락 방법 및 작업 방법 공유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비상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의 피난 및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

| 작업공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위험성 확인결과 | | | 개선 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
| | | 적정 | 보완 | 해당 없음 | | | |
| 밀폐공간 작업 | 맨홀, 피트, 오페수 시설 등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작업 중 근로자 구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이 가능한가? | | ✓ |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여부확인 및 미확인 시 관리자 권한으로 작업 중지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근로자가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 | ✓ |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측정기로 적정 공기상태 여부 확인 | '23-xx-xx | 안젤이 |
| 보안작업 | 경비 등 | 시설물 관리(순찰 등) 작업중 어두워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장비를 지급 및 착용하였는가? | ✓ | | | | |
| | | 물기, 결빙 지역 등 미끄러운 장소의 안전조치와 주의표지는 부착하였는가? | | ✓ |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 '23-xx-xx | 안젤이 |
| |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시간 또는 적절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작업 중간의 휴식시간 부여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교대근무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휴게실 전열기구 화재예방을 위해 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교대근무자에게 뇌-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는가? | | ✓ | 안전조회 시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 결과 모니터링 실시 | '23-xx-xx | 안젤이 |
| 사무작업 | 사무실 운영 |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 | ✓ | 주기적인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 사무기구(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였는가? | | ✓ | 경고표지 부착 | '23-xx-xx | 안젤이 |
| | |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작업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책상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 중 책상과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상 재배치로 통로 확보가 되어 있는가? | | ✓ | 책상 주변 이동통로 확보 | '23-xx-xx | 안젤이 |
| |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휴게공간 마련 | '23-xx-xx | 안젤이 |
| | | 장시간 컴퓨터사용으로 인한 VDT중후군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 |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시간 등을 부여하고 있는가? | | ✓ | 휴식시간 부여 및 스트레칭 실시 | '23-xx-xx | 안젤이 |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응급연락체계 등 비상 대피에 대한 안내는 구축되어 있는가? | | ✓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 실시 | '23-xx-xx | 안젤이 | | |

II

건물관리업 사망사고예방

건물관리업 안전점검 6대 위험작업 체크리스트

건물관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건물관리업 사고발생 원인·대책

이동 사다리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이동 사다리 작업 안전 지침

달비계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건물관리업 질병사망자 발생 현황

경비관련 직종 질병 사망자 예방

직업병 안심센터 소개



건물관리업 안전점검 6대 위험작업 체크리스트



| 점검사항 | 점검내용 | 점검 결과(O, X) | | |
|-----------------------|---|-------------|----|-----|
| | | 적정 | 미흡 | 비대상 |
| 공통사항 보호구 | 개인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착용 *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 | |
| 기계식 주차설비 | 01. 주차설비 내부 출입 시 전원차단 확인 | | | |
| | 02. 주차설비 수리·점검 시 기동스위치에 「사용금지」 표지 부착 확인 | | | |
| | 03. 수리 작업자 외 차량리프트 임의 탑승 금지 조치 | | | |
| | 04.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 | | |
|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 01. 잠금장치 관리 및 담당자 지정 | | | |
| | 0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 지정 | | | |
| | 03.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여부 확인 | | | |
| 고소작업 (이동식 사다리등) | 0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 2인1조 작업 ▲ A형 사다리 최상부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 | | |
| | 02.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 | | |
| | 03. 고소작업대, 말비계, 작업발판, 달비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 | | |
| 밀폐공간작업 | 01. 밀폐공간 확인 및 무단 출입금지 조치 | | | |
| | 02. 작업 전·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실시 | | | |
| | 03. 작업(재출입 포함)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 | |
| 이동통로 (계단 등) | 01. 계단 끝단 미끄럼방지 조치, 바닥 물기 등 제거 | | | |
| | 02. 이동통로 적정 조도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여부 확인 | | | |
| 달비계작업 | 01. 달비계 연결부 마모, 파손 및 작업로프 체결상태 확인 | | | |
| | 02. 로프지지물에 대한 사전안전성 점검 및 구명줄설치 확인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최근 서울지역 건물관리업 종사자 사고사망 15건 발생



- ‘22년 7월**
 기계식주차장 소유한 건물관리소장이 1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지하로 떨어져 사망
 - ‘20년 11월**
 빌딩 내 지상 1층에 정지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반구 상부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하강하면서 추락하여 사망
 - ‘20년 12월**
 빌딩 지상 1층에서 운반구가 없는 엘리베이터 문을 비상키로 수동으로 여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
-
- ‘22년 4월**
 아파트 현관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누수 점검하고 내려오다 떨어져 치료하다 사망
 - ‘22년 5월**
 오피스텔 외부 화단에서 전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중 사망
 - ‘20년 7월**
 아파트 관리소 시설 담당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유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
 - ‘20년 10월**
 빌딩 내 시설업무 담당 근로자가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천장 내부 전선 정리 작업을 실시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
- ‘22년 5월**
 정화조 배관 공사를 위해 개방한 식당 주방안 맨홀에 떨어져 사망
 - ‘20년 8월**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서 집수정 내부로 들어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들어갔다가 3명 모두 질식사망
 - ‘20년 8월**
 공장동 정화조 청소작업을 위해 들어간 작업자 1명이 산소 결핍으로 쓰러지자, 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를 위해 내부에 들어간 뒤 쓰러져 1명 질식사망, 1명 부상
-
- ‘21년 1월**
 아파트 경비원(70대)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침구류를 옮기던 중 지하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치료 중 사망
 - ‘21년 2월**
 빌딩 경비원(70대)이 야간 순찰을 돌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넘어져 부상, 치료 중 사망

건물관리업 사고발생 원인·대책

작업전 안전점검! 산업재해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기계식 주차설비 & 엘리베이터

원인

- 출입금지 구역 미지정, 설비 가동 중 내부 출입
- 설비 내부 작업 중 가동스위치 임의 조작

전원 차단 확인

사용금지 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대책

- 점검 시 설비의 전원 차단 확인
- 다른 근로자가 조작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표지 부착
-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고소작업 (이동식 사다리 등)

원인

-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사다리 사용
-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기울어진 상태로 설치·사용

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2인 1조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대책

- A형 사다리 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 금지
-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실시
-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작업

원인

- 작업 현장 환기 미실시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팬으로 환기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대책

- 작업 전·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실시
- 작업(재출입 포함)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이동통로 (계단 등)

원인

- 뒷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등 불안정한 방법으로 작업 중 넘어짐
- 야간 작업 중 조도 확보 미흡으로 넘어짐

미끄럼방지조치

헛디딤 사고요인 개선

75 LUX 75럭스 이상 조도유지

대책

- 계단 끝부분 미끄럼방지조치 실시
- 계단 헛디딤 사고요인 작업 방법 개선
- 75럭스(LUX) 이상 조도 유지

이동식 사다리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22년 5월
오피스텔 1층 화단에서 나뭇가지 전지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 '22년 6월
아파트 필로티(1층) 전등교체 위해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함.

○ '22년 7월
음식점 상부 배기시설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함.

○ '22년 7월
천장에 설치된 배관 점검 중 사다리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함.

안전보건자료실

※ 자료명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포털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 입력 또는 주소창에 <http://www.kosha.or.kr> 입력

검색 '사다리' or '추락' 입력

카드뉴스 · 교재(OPS)



- ① [카드뉴스] 위험한 사다리 타기
- ②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③ 사다리 이용작업 중대재해 사례

교안(PPT)



- ① 현장작업자 안전가시설 작업안전
- ② 건물관리업 고령근로자 재해예방 교육용 교안
- ③ 기계·기구, 설비 정비·보수 작업안전

표지 · 포스터



동영상 · VR



- ① VR-안전가시설(이동식 사다리)
- ② 360 VR - [추락] 사다리 경작업
- ③ [현장르포] 추락하는 건설노동자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 지침

필수 안전작업지침

-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 2인 1조 작업 및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발붙임 사다리 (A형, 조경용)



|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 안전작업 지침 |
|--------------------------|---|
| 1.2m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안전모 착용 |
| 1.2m 이상 ~ 2m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 2m 이상 ~ 3.5m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 |
| 3.5m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공통사항

-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안전작업 지침

-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달비계 작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지지로프 풀림



○ '19년 8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주택 외벽 방수공사 현장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코킹 작업 중, 피뢰침에 묶인 지지 로프가 풀리면서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지지로프가 외벽 모서리에 접촉, 파단



○ '19년 8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외부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 중, 지지로프가 아파트 외벽 모서리에 접촉, 파단 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함.

달비계가 기울어지며 떨어짐



○ '19년 9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달비계가 기울어지며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1 안전대(추락방지대)를 수직구멍줄에 체결
- 2 로프 결속 상태 및 고정부 상태 확인
- 3 로프 파손 상태 및 접촉부 마모 가능성 확인

작업용 지지로프는 2개소의 고정점에 각각 결속하고 클립으로 체결하여 풀림 방지조치가 되어 있는가?

지지로프가 구조물과 면하는 부분이 마모 가능성은 없는가?

지지로프는 충분한 구조내력을 갖는 구조물(결속용고리)에 지지되었는가?

안전대를 수직구멍줄에 걸고 작업하고 있는가?

근로자는 안전작업 절차를 준수 하고 있는가?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는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달비계 작업 시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가?

달비계 작업 추락재해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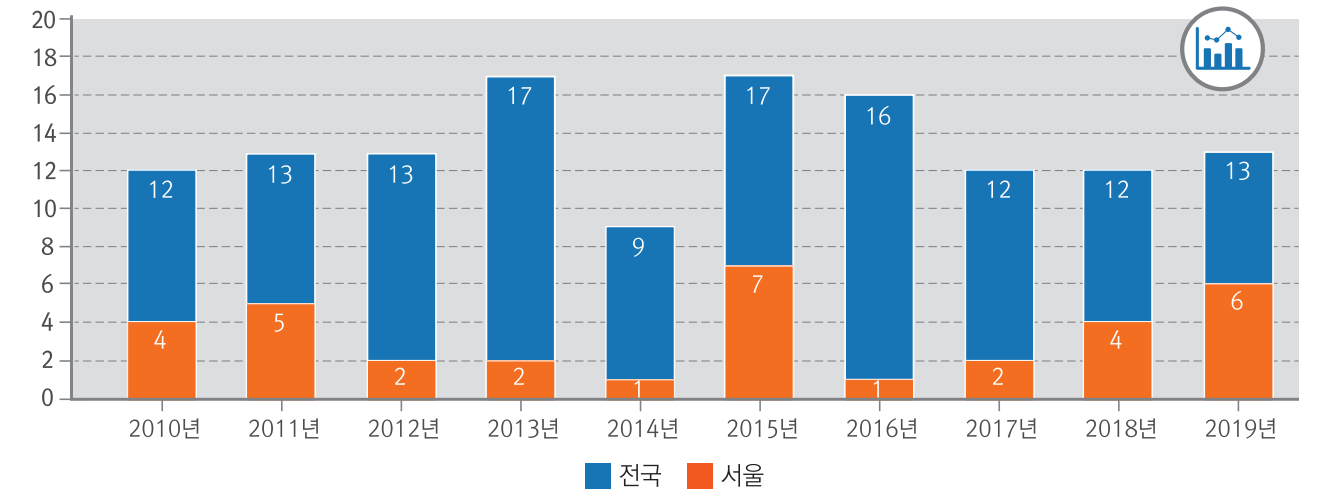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달비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최근 2년간 서울권역에서 달비계 사망사고 급증

(단위 : 명)

| 구분 | 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전국 | 134 | 12 | 13 | 13 | 17 | 9 | 17 | 16 | 12 | 12 | 13 |
| 서울 | 34 | 4 | 5 | 2 | 2 | 1 | 7 | 1 | 2 | 4 | 6 |
| 서울 점유율 | 25.4% | 33.3% | 38.5% | 15.4% | 11.8% | 11.1% | 41.2% | 6.3% | 16.7% | 33.3% | 4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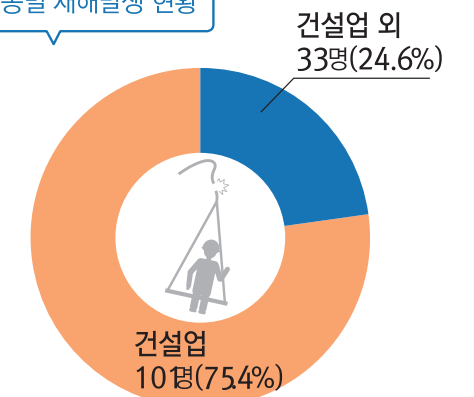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달비계 사망사고 재해발생 분석

○ 달비계 추락재해 발생 원인의 74%가 지지로프의 풀림 및 파단

재해발생 유형

| 재해발생 유형 | 명 | 점유율(%) |
|---------------|-----|--------|
| 계 | 134 | 100 |
| 지지로프 풀림 | 69 | 51.5 |
| 지지로프 파단 | 30 | 22.4 |
| 작업대 탑승 중 추락 | 12 | 9.0 |
| 고정된 지지대 파손 | 8 | 6.0 |
| 작업 중 작업대에서 추락 | 8 | 6.0 |
| 작업대 외 이동 중 | 5 | 3.7 |
| 지지로프 길이 미 확보 | 2 | 1.5 |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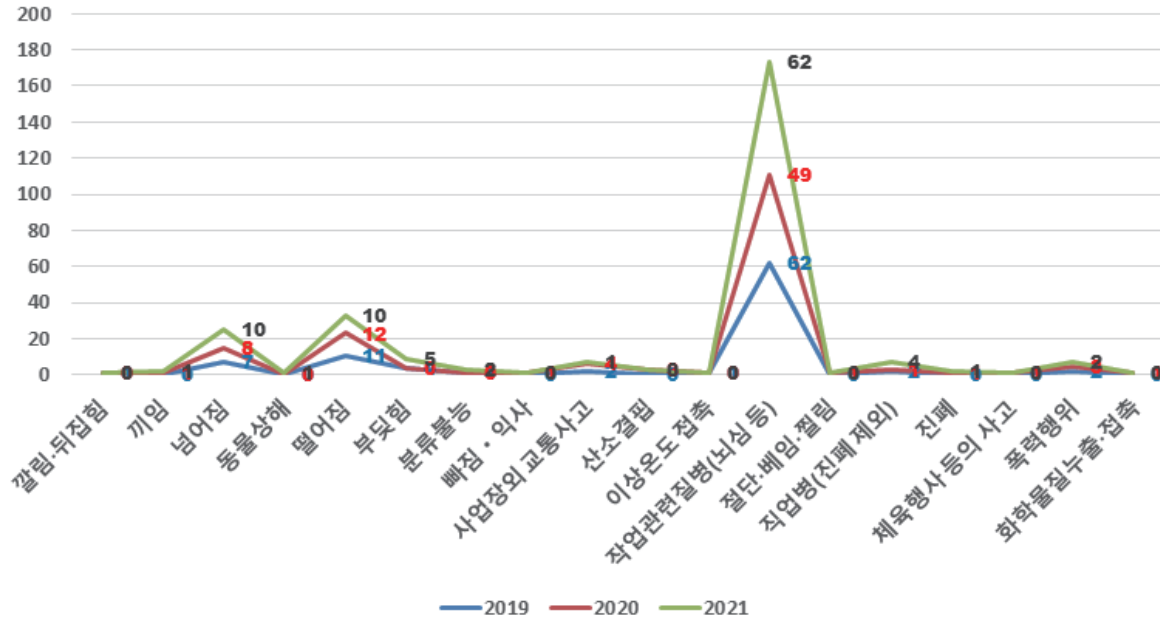


건물관리업 질병사망자 발생 현황

재해사망자 발생형태에 따른 연도별 추이('19~'21년, 2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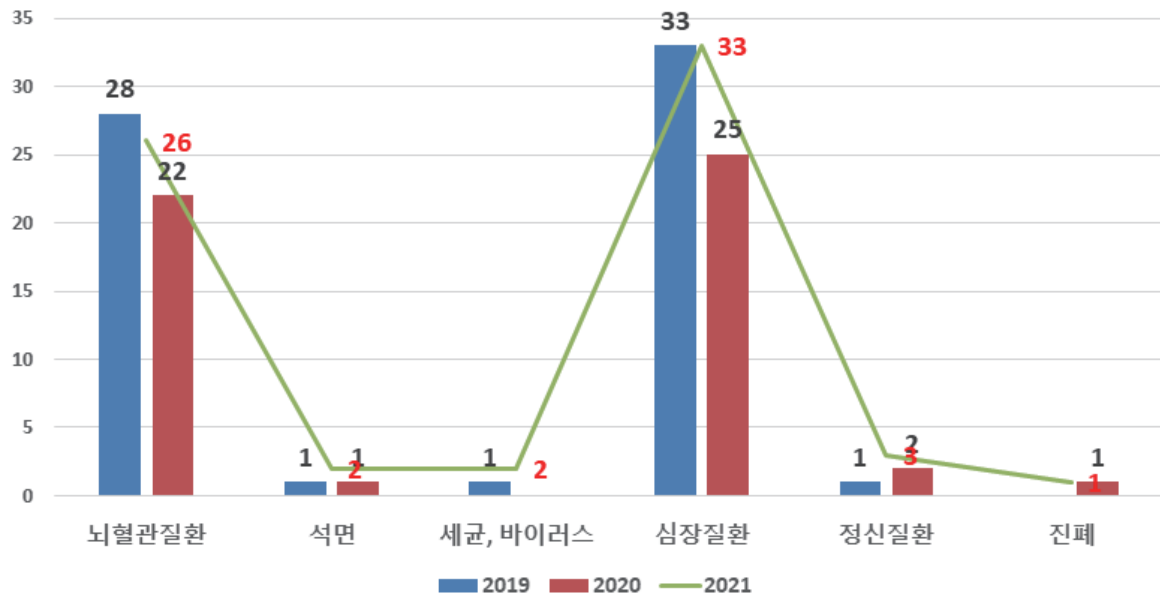
• 건물관리업 재해사망자 중 작업관련질병(뇌심 등)이 173명(63.4%) 차지



건물관리업 질병사망자 연도별 추이('19~'21년, 182명)



•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생율이 전체의 92%를 점유
- 뇌혈관질환은 76명(41.8%), 심장질환은 91명(50%)



경비관련 직종 질병 사망자 예방

경비원님! 평소 아래의 증상이 의심 되시나요?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심혈관질환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1577-6497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근로자건강센터



뇌혈관 질환 의심 증상



- 힘이 빠지거나 신체 감각이 둔해짐
-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 말이 새고 어눌해짐
- 한쪽 얼굴이 마비됨
- 어지러움 및 구토

심혈관 질환 의심 증상



-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의심
-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초점이 흐려져 사물이 잘 안보임
-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어깨, 겨드랑이, 턱까지 통증을 느낄 수 있음
-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감소할 경우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일터에서의 각종 유해물질과 환경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3500만 직업인의 건강, 직업병 안심센터가 지켜 나가겠습니다.

☀️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대표전화 1588-6798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



직업병 안심센터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진료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10개 종합병원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 | | | | |
|---|--|---|---|
| 서울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학교병원 02)6953-6718 |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학교병원 032)890-0842 |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고려대 안산병원 031)8099-6311 |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 구리병원 031)560-2725 |
|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0342 | 대전-충청 직업병 안심센터 충북대학교병원 043)269-7201 | 광주-전라-제주 직업병 안심센터 조선대학교병원 062)229-7835 | 대구-경북 직업병 안심센터 계명대 동산병원 053)258-6449 |
| 부산-울산 직업병 안심센터 고신대복음병원 051)990-3157 | 경남 직업병 안심센터 양산 부산대병원 055)360-377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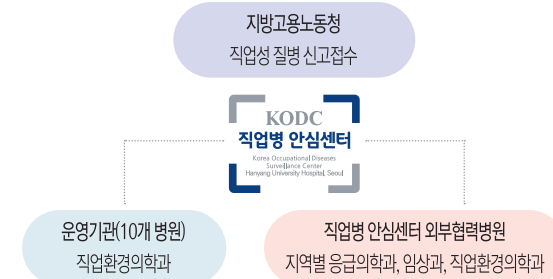
직업을 알면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반복되는 작업과 각종 유해환경 노출,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으며 직업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질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모든사람의 건강은 안전한 일터에서 시작됩니다. 선진산업보건정책, 직업병안심센터가 만들어갑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10개 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병 의심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직업을 묻는 의사, 직업을 말하는 환자, 직업병 치료의 시작입니다.

▶ 직업병 안심센터의 업무

- 환자 진료단계에서 직업성 질병의 가능성을 진단**
환자의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 직업성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업보건정책을 수립**
다양한 직업성 사례를 분석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직업성 질병 환자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정책개발을 지원합니다.
- 산업보건전문가와 현장조사 실시**
직업성질환이 의심되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해 나갑니다.
- 고용노동청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직업성질환 사례와 업종별 유해 작업환경 등 임상자료를 통해 고용노동청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을 지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진료비 지원이 되나요?**
개인정보 제공시 직업병 안심센터 외래 진료 초진료, 재진료를 비롯한 진료 및 검사비를 직업병 안심센터 예산안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 **사업장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연락처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사업장에 알리지 않습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 후 진행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Korea Occupational Diseases Surveillance Center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그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직업병 안심센터에 신고

- 24시간 신고센터 1588-6798**
- 직통 010-9523-8979**
- 카카오톡 kodcseoul**

환자가 본인의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면 근처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를 내원하여 신고하거나 직업병 안심센터에 전화로 신고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직접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서울 직업병안심센터

III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 핵심요소 | 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
| 경영자 리더십 | 0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 | |
| | 0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 | |
| | 0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 | |
| 근로자 참여 | 0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 | |
| | 0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0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 | |
| 위험요인 파악 | 01.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 | |
| | 02.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 | |
| | 0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 |
| | 04.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 |
| | 0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01.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 |
| | 02.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 03. 위험요인을 대체·통제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 0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 05. 점검·정비·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 |
| | 06.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하고 있습니까? |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0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 |
| | 02.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 |
| | 03.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 | |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0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 | |
| | 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대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 | |
| 평가 및 개선 | 0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 | |
| | 0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 | |
| | 0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 | |

1. 경영자 리더십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 | | |
|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 | |
| 3 경영방침에 사업장 유해·위험 및 규모의 특성, 모든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법규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를 포함한다. | | | |
| 4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
| 5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 | | |
| 6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 | |
| 7 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 | |
| 8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 | |
| 9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 | | |
| 10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 | | |
| 11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 | |
| 1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 | | |
| 13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 | | |
| 14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내·외부 교육 참석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 | | |
| 15 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 | |
| 1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다. | | | |

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근로자의 참여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 | | |
| 2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
|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 | | |
|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 | | |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 | | |
|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 | | |
|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 | |
| 8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 | | |
| 9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 | |
| 10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 | |

근로자 참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 | | |
| 2 수급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 | | |
|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
|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 사례를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
|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 | | |
|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 | | |
|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도입 시 또는 설비변경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 | | |
|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 | | |
|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 | |
| 10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의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활동을 한다. | | | |

위험요인 확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 | | |
|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 | | |
| 3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 | | |
| 4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① 제거 → ② 대체 → ③ 통제 → ④ 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 | | |
| 5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 | | |
| 6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 | |
|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 | | |
| 8 보유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 | | |
|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 | | |
|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를 작성한다. | | | |
|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한다. <small>* Lock Out: 잠금장치, Tag Out: 작업중임을 표시</small> | | | |
| 12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 | |

위험요인 제거·통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 | | |
|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 | | |
| 3 현장에 맞는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 | |
| 4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 | | |
|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 | | |
|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 | |
|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 | | |
|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 | | |
| 9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 | |
|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한다(반기1회 이상). | | | |
|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비상조치계획을 개선한다. | | | |

비상조치 계획 수립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 | | |
|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며,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 | | |
|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 | | |
|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
|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
|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 | | |
|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
|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공유한다. | | | |
| 9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 | | |
| 10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 | |
|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 | |

도급·용역 안전보건확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네 | 아니오 | 비고 |
|--|---|-----|----|
| 1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 | | |
| 2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
| 3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 | |
| 4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 | |
|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 | | |
|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 | | |
| 7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 | |
| 8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 | | |
| 9 도출된 문제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 | | |
| 10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 | |
| 11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 | | |

7. 평가 및 개선



평가 및 개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참고 자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G-107-2013) 안전보건 리더십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X-60-2013) 설비배치 계획 및 변경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KOSHA GUIDE(P-93-2020) 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 KOSHA GUIDE(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IV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
| 제 14 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57 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 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고: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34 조 (법령 요지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37 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 금지표지/경고표지/안내표지/지시표지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5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6 조 (관리감독자) 제 17 조 (안전관리자) 제 18 조 (보건관리자) 제 19 조 (안전보건담당자) |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작업반장,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 각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38 조 (안전조치) |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등근통 등 방호조치 ○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
| 제 39 조 (보건상의 조치) |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
| 제 63 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00 만원 이하 벌금 |
| 제 66 조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58 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늄,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 억원 이하 과징금 |
| 제 29 조 (안전·보건 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 (6시간/분기), 사무직 (3시간/분기)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 (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 (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
| 제 80 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등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 |
| 제 84 조 (안전인증) |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 |
| 제 93 조 (안전검사) |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10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제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12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18 조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허가) | ○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 아연·베릴륨·비스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 |
| 제 114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25 조 (작업환경측정) | ○ 소음 (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반기 1회/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28 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직종 근로자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29 조 (일반건강진단) 제 130 조 (특수건강진단 등) |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 (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작업 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164 조 (서류의 보존) |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 300 만원 이하 과태료 |

V

안전보건스티커 모음집

- 질식 위험공간
- 달비계 작업안전
- 떨어짐주의
- 사다리주의
- 추락주의
- 미끄럼주의
- 계단주의
- 안전에 정조준!
- 추락위험
- 안전모 착용
- 안전 꼭 챙겨주세요
-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질식 위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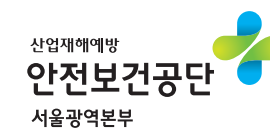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 ·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구조작업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달비계 작업안전



구명줄 설치

로프 접촉부 보호

안전대 착용 후 탑승

- ➔ 달기로프와 다른 고정점을 가진 구명줄을 견고한 지지물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 ➔ 구명줄은 바닥까지 닿도록 조치하여 구명줄로부터 안전대 탈락 방지
- ➔ 구조물과 접하는 지지로프 등 마모 및 손상 방지를 위해 가죽이나 고무패드 부착
- ➔ 달비계 탑승 전에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연결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서울광역본부

※ 해당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참고로 활용 바랍니다.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떨어짐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사다리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추락주의



추락주의



추락주의



추락 주의

추락 주의

추락 주의

추락 주의

[경고]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경고]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경고]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경고]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경고]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준수!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미끄러짐주의

연간 4,000명의 근로자가
바닥에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관리본부



서울특별시



미끄러짐주의

연간 4,000명의 근로자가
바닥에서 다치거나 사망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관리본부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계단주의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안전에
정조준!



안전에
정조준!



안전에
정조준!



안전에
정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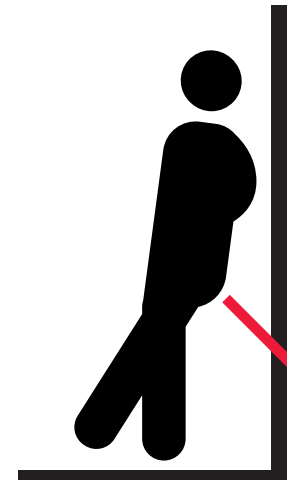
안전에
정조준!



안전에
정조준!



주의



기대면 추락위험

위험에
기대지
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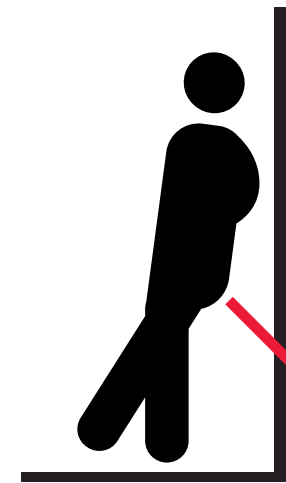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서울광역본부

주의



기대면 추락위험

위험에
기대지
마시오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안전모 착용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시본부

서울특별시

○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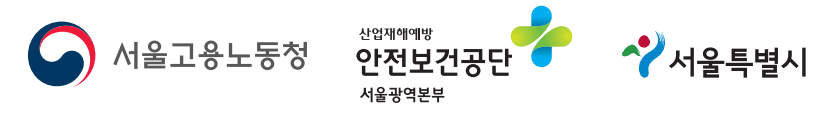
○ 갱도의 입구 등

[온라인 설문조사 바로가기] ※ 의견 채택 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안전 꼭 챙겨주세요



※ 안전보건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바탕으로 만든 표지입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 ✓ |작업전| 안전모 지급하기
- ✓ |작업중| 안전모 벗지않기
- ✓ |바르게| 안전모 착용하기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장

노길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서울광역본부장

고광재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재용

공단발간번호 2023-서울광역본부-417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문화팀 T 02-6711-2816

